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5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최수진

유상범 · 김대식 · 김용태

서지영 · 이인선 · 정성국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
	<u>다.</u>